

참고 1

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법위반 기업 관련 참고자료

- (목적)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(조례 제1조)
- (법위반 적용 법률)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4개 분야 11개법* (조례 제2조)
 - 1)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- (법위반 조회기간)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(조례 제6조)
 - 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- 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- (적용대상)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 - (도내기업)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- (적용방법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-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- 경기도 레전드 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제출
 - 기업 법위반사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기업 법위반사실부존재여부 확인서(서식2 참조) 제출
- 법위반 사실 확인 : 전담기관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에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(단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은 기업 제출분을 통해 확인)